

第143回 定期會

忠清北道議會 特別委員會

# 活動結果報告書

忠清北道議會  
特別委員會

# 목 차

I. 총 평	429
II. 주요 활동일정	431
III. 국회입법청원 추진결과	436
IV.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결과	442
V. 첨부자료	444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명단	445
2.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안)	446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정부측 법률안)	453
4.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의원 32인 발의안)	462
5.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목록	474

# I. 총 평

-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충주댐, 대청댐 등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 댐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기에
- 1996년 7월 24일, 12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반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음
-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 있게 분석·확인·검토하고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충청북도 경계인근에 위치해 있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후조치 및 영월댐 건설에 따른 사전조치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하여 온 결과,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1996.12.12일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 심사결과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정부측의 법률안이 제출되면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계류된 상태에서

- 정부에서는 우리도의회 청원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성안하여 1997. 11.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우리도회의 입법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국회의원 32인이 발의한 법률안도 같이 상정되어
- 1997.11.12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댐건설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주댐, 대청댐 등 댐주변지역을 현지확인하여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파악하여 집행부에 처리토록 촉구해온 결과 총 27건중 13건은 완료하고 14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
- 지난 1년반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특위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댐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 특히, 국회입법청원안 완결을 위하여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과 청원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Ⅱ. 주요 활동일정

###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설치 ('96.7.24, 제127회임사회)

- 12명 : 박학래, 최선환,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은섭, 박제국, 박상수

※ 박상수의원 추가선임 : '96.10.29

- 활동기간 1년 : '96.7.24 ~ '97.6.30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97.6.21, 제138회임사회)

- 당초 '97.6.30까지 → 변경 '97.12.31까지

### ◆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96. 8.6)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수립, 특별법 내용 협의
- 향후 건설될 용담댐, 영월댐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현지확인 및 관계부처 방문 등)

### ◆ 특별법소위원회 회의 ('96. 8.16)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에관한법률안 검토
-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법률전문가 선정, 소개 국회의원 선정 등

### ◆ 청원입법관련 자문법률전문가 면담 ('96. 8.20)

- 자문법률전문가 : 정영수 변호사 외 1명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검토

◆ 국회 방문 ('96. 8.23)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취지설명
- 청원입법을 위한 소개 국회의원 협의  
(청원소개의원 : 김영준 의원)

◆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96. 8.26)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청원서 채택 (원안가결)

◆ 법률안 청원의견 채택 ('96. 8.28)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서 (원안가결)

◆ 한국수자원공사 관제자 래방 ('96. 9.18)

- 댐관리처 댐운영부장 장기환 외 1명
-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댐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다 하겠음

◆ 특별위원회 간담회 ('96. 9.20)

- 특별법 청원접수후 위원들의 능동적인 의정활동 전개
- 전국 운영위원장 및 의장단협의회를 통하여 특별법에 대한 취지 및  
여론 환기

◆ 청원서 국회제출 ('96. 9.23)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96. 10.7)

◆ **충주댐 주변지역 현지확인** ('96. 10.1~10.2)

- 댐주변지역 현황 및 문제점, 주민요구사항 등 청취
  - 충주댐 주변지역 (충주 목행동 산64-2 송조희, 단양군 별곡리),
  - 충주시청, 단양군청

◆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96. 10.7)

- 댐주변지역 현지확인 결과 협의
- 대청댐, 용담댐 등 댐주변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건의 사항 등을 도출, 건의 및 처리촉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추진

◆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96.11.2)

- 청원제출후 국회 처리상황 설명 및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국회의원, 정당관계부서 등에 자료 송부 및 방문활동 구체화)

◆ **입법청원안 유인배부** (500부)

- 국회의원 299, 시도의회회장 및 운영위원장 32, 정당 정책위 8, 신한국당 대책위원 18, 환경포럼 50, 기타 언론홍보 및 국회방문 등 93

◆ **국회 및 정당 방문** ('96. 11.12~11.15)

- 국회, 국회의원, 정당관계자, 중앙부처 등 12개기관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황 및 향후 의정방향 논의 청원입법안 취지설명 및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등

◆ **청원인 진술 및 국회방문** ('96. 12.11~12.12)

- 청원입법안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청원인 진술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청원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때까지 계류
- 세부내용 : 별 첨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96. 12.23)

- '96.7.24 댐특위 구성후부터 '96.12.20까지 활동결과 중간보고

◆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97. 2.22)

- 충주호낙시터 허가연장 진정 협의
- ※ 민원인 래방 상담 ('97.1.30)

◆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97. 6.18)

- 댐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회 제안
- ※ 활동기간 연장의 건 협의 간담회 ('97. 5.29)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97. 6.21, 제138회입사회)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당초 '97.6.30 → 변경 '97.12.31



## ◆ 도정질문시 댐주변지역 지원촉구

- 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제136회 임시회 ('97.4.15) 최종철 의원
- 제141회 임시회 ('97.9.29) 유재철 의원
- 제143회 정기회 ('97.12.3) 최종철 의원

## ◆ 대청댐 주변지역 현지확인 ('97. 10.10)

- 대청댐 주변지역, 옥천군청
- 대청댐 주변지역 문제점 및 민원·건의사항 수렴

## ◆ 정부측법률안 심사협의 국회방문 ('97. 11.9~11.13)

- 정부측 법률안 심사과정 방청 및 입법청원안 내용 반영 협의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정부측 법률안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 세부내용 : 별 첨

## ◇ 정부측 법률안 추진과정

- 정부측 법률안 성안약속 ('96.12.12) :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입법예고 ('97. 8.11) :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국회에 제출 ('97. 11.5)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건교위 심사 ('97. 11.10 ~11.13)
-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97. 11.12) : 심사보류 결정

### Ⅲ. 국회청원입법 추진결과

#### 1. 청원입법안 국회심사내용

##### ◆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 ('96. 12.12)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청원과 연계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

##### 1) 김영준 소개의원 취지설명

- 댐주변지역 주민은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 수질을 맑게 보전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 과중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절대 필요하며,
-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댐건설 촉진을 위해서도 동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 2)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의견제시

- 댐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건 청원의 취지는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나, 법률안에 일부 추가할점이 있어 정부측(건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하여 입법조치 하여야 할 것임

- 다른 댐지역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다목적댐지역만 언급
- 수혜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려워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등

### 3)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이현석 의견제시

- 건교부 입장에서도 청원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건교부에서 성안중에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97. 11.12)

- 법률안이 댐건설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인하여 환경파괴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청회개최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 ※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대선 등과 관련하여 ‘97 정기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심사 예정

## 2. 청원입법안과 정부특별법률안의 비교

### ◆ 입법청원안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청원서 국회제출 : '96. 9.23
- 국회건교위 청원심사소위 : '96.12.12
  - 청원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을 참고하여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 본건 청원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

### <주요내용>

-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 건교부장관이 지원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고
- 재원은 ① 일반회계 출연금, ②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③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함
-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안에 명기함
  - ①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 ② 주변지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등 특수지원사업
  - ③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소득중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등
  - ④ 환경변화 조사연구기관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 ◆ 정부측법률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 입법예고 : '97. 8.11, 국회 제출 : '97. 11.5

○ 국회건교위 상정,심사 : '97. 11.10~11.13

- 댐건설절차 대폭 간소화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등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 <주요내용>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러한 지원이 다목적댐 외에 생·공용수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댐건설 절차를 대폭 개선 (간소화) 하기 위하여,
-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98. 9.1일부터 시행
- 우리도의회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장(댐건설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43조, 제44조에 반영하는등 5장 52조, 부칙 13조로 구성됨
- 우리도의회 청원과 관련된 내용 중
  -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법률안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 대규모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 댐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와 시장군수가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별도회계로 관리하는 재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 입법청원안의 정부측법률안에 반영여부

###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 우리 도의회 입법청원안은
  -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역을 법률안에 명기한 반면,
- 정부측 법률안은
  -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률안에는 명기하지 않음

### 2.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유용

- 우리 도의회 입법청원안은
  - ① 일반회계 출연금, ②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③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 정부측 법률안은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되,  
- 일반회계 출연금이 아니라, 댐 용수의 판매수입금중 일정비율로 출연토록 하여,  
- 기금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 3. 결론적으로

- 우리도의회가 청원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운용 등 청원취지와 내용은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음
- 다만, 기금의 재원중일반회계 출연금과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제외되었음.

※ 앞으로 재심사과정 및 청원심사 과정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영을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 참고로

- 우리도의회가 '96. 9.23일 입법청원한 법률안을 토대로 하여
- 권오을 의원 외 32인이 '96. 12.10일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의회 청원안을 그대로 (똑같이) 반영하여 同名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동 법률안 역시, '97. 11.10~11.12일까지 국회 건교위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되었음

## IV.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결과

### ◆ 댐주변지역 현지확인

- 충주댐주변지역 ('96. 10.1~10.2)
  - 충주시 목별동 승조회, 단양군 별곡리
  - 충주시청, 단양군청
- 대청댐주변지역 ('97. 10.10)
  - 대청댐 주변지역, 옥천군청

### ◆ 민원·건의 추진결과

- 총 26건 (완료 12, 추진중 14) : 세부내용 별첨
  - 자원이용세 신설 (완료)
  - 적성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중)
  - 옥순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중)
  - 댐건설로 인한 이설도로 포장사업비 국고지원 (추진중)
  - 충주호 국민관광지 개발대책 (추진중)
  - 대청광역상수도 취수탑 상류지역 이전 (완료)
  -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비 국고지원 (완료)
  - 용담댐 건설에 따른 현안문제 (추진중)



- 옥천종합관광휴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혜자 부담조치 (추진중)
- 댐지역내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비 국고지원 (완료)
-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개발제한규제 완화 (완료)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만료후 대책 (완료)
- 댐주변 쓰레기 수자원공사 수거처리 일원화 (완료)
- 댐내 선착장시설 건설비 지원 (추진중)
- 댐내 마을노후 자가도선 교체비 지원 (추진중)
- 송조회 운영비 전액 지원 (추진중)
- 유료뉴시터, 가두리양식장 근본대책 수립 (완료)
-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완료)
- 댐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완료)
- 충주조정지댐 하류지역 수해상습 농경지 대책 (추진중)
- 하검단 재해위험지구 지원 (추진중)
- 수위조정지댐 (수중보) 건의 (추진중)
- 산업기능 보강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추진중)
- 개발가능한 제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 (완료)
- 유희지관리 위탁협약의 개선 (완료)
- 상진~고수간 비상우회도로 건설 (추진중)

## V. 첨부자료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명단
2.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안)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정부측 법률안)
4.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의원32인 발의안)
5.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목록

# 1. 1. 댐關聯對策 特別委員會 委員

위원장	박 학 래 의원	(교육사회, 비례)
간 사	최 선 환 의원	(건설교통, 충주6)
위 원	최 종 철 의원	(기획경제, 청주4)
	이 선 호 의원	(농림수산, 충주5)
	이 길 하 의원	(교육사회, 제천1)
	오 성 진 의원	(건설교통, 청원2)
	유 재 철 의원	(교육사회, 보은2)
	송 재 주 의원	(농림수산, 옥천1)
	장 준 호 의원	(건설교통, 영동1)
	박 온 섭 의원	(농림수산, 괴산2)
	박 제 국 의원	(교육사회, 음성3)
	박 상 수 의원	(내 무, 제천4)

※ 박상수 의원 추가선임 : '96.10.29

---

◇ 활동기간 : '96.7.24 ~ '97.12.31

※ 활동기한 6개월 연장 : 당초 '97.6.30 ⇒ 변경 '97.12.31

## 2. 특정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 도의회 입법청원안)

#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案)

##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을 통하여 水資源의 開發과 利用에 圓滑을 기하고 周邊地域 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多目的댐의 水質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多目的댐" 이라함은 特定多目的댐法 第2條 第1項 第1號에서 定義하는 댐을 말한다.
2. "環境基礎施設" 이라함은 環境관련法律에 의하여 設置하는 下水, 糞尿, 汚·廢水,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3. "多目的댐周邊地域" 과 "受惠地域" 이라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指定·告示등) ①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은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告示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指定하고자 할때는 관련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이하 "市·道知事"라한다)의 意見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를 거쳐야한다. 指定된 내용을 變更 할때도 또한 같다.

第4條(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 이라한다) 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內에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 라한다) 를 둔다.

② 委員會의 構成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 2 章 支 援 事 業 基 金

第5條(基金의 設置)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特定多目的의댐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이하 "基金" 이라한다)을 設置한다.

第6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一般會計로 부터의 出捐金
2. 特定多目的댐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受託管理者의 出捐金
3.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前年度 使用基金의 移越額및 精算額

6. 其他 造成된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受託管理者는 發電, 水道 또는 工業用水의 販賣收入金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比率의 金額을 出捐하여야 한다.

第7條(基金의 負擔) ① 第6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에서 負擔하는 金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負擔金을 負擔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納期日을 정하여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納付토록 한다.

第8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이를 使用한다.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
2. 支援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第9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 基金의 運用·管理 및 使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이 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基金管理基本法에 따른다.

第10條(基金의 借入) 基金의 運用上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基金의 負

擔으로 金融機關이나 다른 基金으로 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第 3 章 支 援 事 業 的 施 行

第11條(支援事業計劃의 樹立)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多目的댐周邊地域別 支援事業에 관한 長期綜合支援計劃(이하 "長期計劃" 이라한다)을 樹立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의 樹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事業計劃書 提出) ① 多目的댐 周邊地域의 市長·郡守는 第11條 第1項의 長期計劃에 의하여 해당년도 事業計劃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事業計劃書를 綜合하여 事業施行 前年度 4月 末日 以前까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한다.

第13條(支援事業의 種類등) ① 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號의 1 과 같다.

1. 周邊地域 自治團體에서 運營하는 環境基礎施設 運營
2. 周邊地域 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環境基礎施設등 特別支援事業
3.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水質保全 特別對策



地域으로 指定된 地域의 開發과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施行하는 所得增大, 公共施設, 育英事業등

4. 環境變化調査 研究機關 設置·運營支援事業등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의 類型別 支援內容등에 관한 具體的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支援金 決定)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 부터 제출받은 事業計劃과 基金運用計劃을 確定하고 이에 所要되는 事業費는 支援基金으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한다.

第15條(支援事業의 施行期間) ① 第13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支援事業은 持續적으로 施行한다.

② 第13條 第1項 第3號의 事業은 第11條 第1項의 長期計劃上 事業終了時까지로 한다.

#### 第 4 章 補 則

第16條(報告 및 檢査)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基金이 支援된 地方自治團體의長 에게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支援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標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과의 關係) ① 이 법 施行과 同時에 特定多目的법 第 42條의3과 第42條의4는 廢止한다. 다만 同條와 관련하여 施行되는 事業은 事業 終了時 까지 從前의 法適用을 받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周邊地域支援事業 財源 使用殘 額은 事業 終了後 2月以內에 이 法 第6條의 基金으로 納入한다.

###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안 (입법청원안 관련조항)

(정부측 법률안)

#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案

議案 番號	
----------	--

提出年月日：1997. 11. .  
提出者：政 府

## 提案理由

2000年代의 用水需要增加에 대비하여 水資源을 安定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水資源을 體系的으로 開發하고 댐을 持續的으로 建設하여야 하나,

現行 特定多目的댐法은 그 適用對象이 多目的댐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댐周邊地域住民에 대한 支援이 불충분하여 댐의 持續的인 建設을 促進하기에는 미흡하므로

特定多目的댐法을 廢止하고 그 대신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을 새로이 制定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하는 댐建設長期計劃을 수립하여 水資源을 綜合的·體系的으로 開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댐周邊地域住民에 대한 支援을 擴大함으로써 댐建設을 촉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建設交通部長官은 水資源을 효율적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10年마다 댐建設長期計劃을 수립하도록 함(案 第4條).

나. 댐建設豫定地域안에서 建築物의 建築, 土地의 形質變更, 多年生樹木의 栽植, 家畜의 飼育 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도록 함(案 第6條).

다. 댐建設事業施行者는 댐建設에 관한 基本計劃 및 實施計劃을 수립하도록 하고, 基本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土地收用法에 의한 事業認定이 있는 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公有水面占用許可·農地轉用許可·河川占用許可 등 관련 認·許可가 있는 것으로 봄(案 第7條 내지 第9條 및 第11條).

라. 댐은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댐使用權者 또는 댐의 設置·運營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는 政府投資機關에 댐의 管理를 委託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條).

마. 大規模댐이 建設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地域住民의 福利向上을 위하여 댐建設期間동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을 실시하도록 하고, 댐建設이 완료된 후에는 댐管理者와 市長·郡守 또는 區廳

長이 住民福祉增進을 위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을 실시하도록  
함(案 第41條 및 第43條).

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을 建設한 者에게 댐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國家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者가 建設하는 댐으로서 多目的댐으로서의 效用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建設하는 者에게 그 建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補助하거나 貸付를 貸付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하거나 貸付를 貸付한 때에는 그 補助 또는 貸付를 받은 者에 대하여 당해 댐建設에 관하여 필요한 指示를 하거나 建設의 目的인 당해 댐의 施設을 檢査하거나 報告하게 할 수 있다.

### 第 3 章 댐建設地域住民에 대한 지원

第39條(移住定着地未移住者에 대한 지원) ①댐建設地域을 管轄하는 市·道知事는 水沒移住民중 移住定着地에 移住를 원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댐建設로 인한 失郷 및 生活基盤喪失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댐受託管理者로 豫定된 者(이하 “댐受託管理豫定者”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支援을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소요되는 資金을 市·道知事에게 融資할 수 있다.

③댐建設地域을 管轄하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소요되는 資金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댐建設로 인하여 用水惠澤을 받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소속되지 아니한 市·郡 또는 區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

2. 댐에 의한 貯水를 이용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④댐受託管理豫定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資金을 融資한 경우 댐建設地域과 댐建設로 인하여 用水惠澤을 받는 地域이 서로 다른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인 때에는 댐建設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로부터 償還받을 資金을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직접 償還받을 수 있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 및 支援資金의 부담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댐建設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は 第5項의 規定에 의한 부담방법 및 기준의 범위안에서 댐受託管理豫定者 및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와 協議하여 구체적인 支援金의 금액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한다.

第40條(水沒移住民에 대한 지원)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水沒移住民이 원활하게 移住하여 定着할 수 있도록 住宅의 新築 등 生活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댐建設事業施行者는 水沒移住民의 生活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의 優先支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댐建設地域을 管轄하거나 댐建設에 따라 用水惠澤을 받는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댐受託管理豫定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訓練의 實施 등 水沒移住民의 生計支援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1條(댐周邊地域整備事業)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이상의 댐의 周邊地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댐의 建設로 인한 與件變化를 감안하여 당해 댐周邊地域의 經濟를 振興하고 生活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建設期間동안 整備事業(이하 “댐週邊地域整備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基準에 해당하는 댐의 基本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댐의 本體가 소재한 地域을 管轄하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댐周邊地域 整備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가 建設하는 댐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整備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댐建設事業施行者 및 管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의 범위의 댐週邊地域整備事業으로

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 ①댐週邊地域整備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基準金額의 범위안에서 施行하여야 한다.

②댐週邊地域整備事業에 소요되는 財源은 댐建設事業施行者와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부담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댐周邊地域支援事業) ①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댐建設이 완료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댐의 一定地域의 住民福祉增進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周邊地域의 支援事業(이하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周邊地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댐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댐周邊地域支援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施行한다.

1.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

2. 댐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 하여야 하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 ①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필요한 財源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1. 댐管理廳 또는 댐使用權者의 出捐金

2. 借入金

3. 조성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②댐管理廳 또는 댐使用權者는 發電用水 및 生活 또는 工業用水의 販賣收入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金額을 第1號의 出捐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은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가 運營한다. 이 경우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을 別도의 會計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第 4 章 補 則

第45條(建設交通部長官 등의 權限) ①댐建設에 관한 基本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第6條의 規定과 河川法 및 骨材採取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 4. 특정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32인 발의안)

##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案

議案 番號	396
----------	-----

發議年月日 : 1996. 12. 10.

發議者 : 權五乙 · 丁世均 · 柳鍾洙  
金鍾學 · 權琪述 · 權正達  
金基洙 · 金明圭 · 金善吉  
金玉斗 · 金容甲 · 金珍培  
朴正勳 · 趙淳昇 · 魚俊善  
吳龍雲 · 李圭正 · 李元範  
李義翊 · 林仁培 · 鄭宇澤  
朱鎮旻 · 河舜鳳議員外8人

### 提案理由

2001年을 기점으로 食水難에 직면할 것이라는 각종 統計資料등을 고려할 때에 흘러버려지는 물을 모아 두었다가 生活用水, 農工業用水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댐은 건설되어야 하나 댐周邊에 사는 住民들은 身體的, 精神的, 財產管理上的 被害를 받고 있으며, 規制에 상응한 補償없이 일방적으로 規制만 하는 것은 댐周邊 住民들의 憲法上 平等權, 財產權, 居住移轉의 자유등을 制約하게 되어 住民들의 怨聲을 誘發, 댐의 물을 맑게 보전하는데 협조를 구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음. 이에 國家 百年大計 차원에서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을 확대하여 住民의 福祉를 增進토록 함으로써 多目的댐

건설을 效率的으로 推進케 하고 水質保全 및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 하고자 이 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多目的댐 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告示케 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이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치도록 함(案 第3條).
- 나.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하에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 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함(案 第4條).
- 다. 支援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을 설치토록 하였음(案 第5條).
- 라. 基金은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特定多目的댐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者의 出捐金,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 借入金, 前年度 使用基金의 移越額 및 精算額, 조성된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特定多目的댐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者로 하여금 發電, 水道 또는 工業用水의 販賣收入金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出捐金의 財源으로 하여

조성하게 함(案 第6條).

마. 建設交通部長官은 負擔金, 納期日을 정하여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案 第7條).

바. 基金의 용도를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과 관련법률상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財産上 被害와 건강상의 被害補償, 環境基礎設施의 設置 및 운영비 지원, 移設道路의 개설 및 移設道路 擴鋪裝事業, 船着場 설치 및 官公船 운영비 지원,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한 環境變化를 調查하기 위한 研究機關 設置, 운영 및 用役費 지원, 多目的댐 區域안의 遊渡船등의 安全 및 內水面 環境保護指導등을 위한 各種 事業所의 運營費 및 管理費 지원,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所得增大, 公共施設, 育英, 醫療事業으로 지정하여 支援事業을 함(案 第8條 및 第12條).

사. 基金의 관리·운영은 建設交通部長官이 하도록 함(案 第9條).

아. 建設交通部長官은 周邊地域 市·道知事の 建議와 委員會의 審議結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支援事業에 관한 5年단위의 長期綜合計劃과 年度別 支援事業計劃을 수립하도록 하고 周邊地域 市·道知事は 해당지역 市長, 郡守의 建議를 바탕으로 年度別 支援建議書를 사업시행 전년도 4月말까지, 長期計劃建議書는 해당년도 4月말까지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도록 함(案 第11條).

자. 支援事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해당 市·郡에 委任하여 시행토록 하고, 市·郡 사업시행을 위한 住民代表와 關係專門家가 참여하는 地域協議會를 들 수 있도록 함(案 第13條).

차. 建設交通部長官은 年度別 計劃과 基金運用計劃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事業費는 支援基金으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하도록 함(案 第14條).

카.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基金이 支援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支援事業에 관한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條).



##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案

###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多目的댐의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한 周邊地域의 被害를 補償하고 생활기반을 再建하는 支援事業을 통하여 水資源의 開發과 利用 및 水質保全에 원활을 기하고 周邊地域 住民의 福祉를 增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多目的댐”이라함은 特定多目的댐法 第2條第1項第1號에서 定義하는 댐을 말한다.
2. “環境基礎施設”이라함은 環境關聯法律에 의하여 設置하는 下水, 糞尿, 汚·廢水,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3. “多目的댐周邊地域”과 “受惠地域”이라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 지정·告示등) ①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告示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 및

受惠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서울特別市長·廣城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의 意見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를 거쳐야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第4條(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하에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章 支援事業基金

第5條(基金의 設置)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多目的댐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6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特定多目的댐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者의 出捐金
3.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前年度 使用基金의 移越額 및 精算額

6. 造成된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7. 기타 收益金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貸使用權者는 發電, 水道 또는 工業用水의 販賣收入金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比率의 金額를 出捐하여야 한다.

第7條(基金의 負擔) ①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受惠地域 地方自治團體에서 負擔하는 負擔金의 算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納期日을 정하여 해당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納付하도록 한다.

第8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이를 使用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

2. 第1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事業

第9條(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관리·운용한다.

②基金의 관리·運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基金의 借入) 基金의 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金融機關이나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第3章 支援事業의 施行

第11條(支援事業計劃의 樹立) 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에 의한 多目的댐周邊地域 市·道知事의 建議와 委員會의 審議結果를 바탕으로 地域別로 支援事業에 관한 5年단위의 長期綜合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과 年度別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1. 周邊地域 市·道知事は 해당지역 市長·郡守의 建議를 바탕으로 年度別 支援事業建議書(이하 “年度別建議書”라 한다)를 사업시행 前年度 4月末日까지, 長期計劃 建議書를 해당年度 4月末日까지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周邊地域 市長, 郡守는 年度別 支援事業建議要請書(이하 “年度別要請書”라 한다)를 사업시행 前年度 2月末까지, 長期計劃建議要請書를 해당年度 2月末까지 작성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수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支援事業의 종류등) ①支援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과 水道法, 國土利用管理法등 관련법률상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農地와 農作物, 家屋, 養殖場 기타 財産上

被害와 住民의 疾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健康상의 被害補償

2. 多目的댐 水質保全을 위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多目的댐 周邊地域 住民이 운영하는 環境基礎設施의 設置 및 운영비 지원

3.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해 초래된 多目的댐 周邊地域 住民의 交通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移設道路의 개설 및 移設道路 擴鋪裝事業, 船着場 설치 및 官公船 운영비 지원

4. 多目的댐 建設 및 운영으로 인한 環境變化를 調查하기 위한 研究機關 設置, 운영 및 用役費 지원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多目的댐 區域안의 遊渡船등의 安全 및 內水面 環境保護指導등을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설치, 운영, 관리하는 각종 事業所의 運營費 및 管理費 지원

6.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所得增大, 公共施設, 育英 및 醫療事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事業의 종류별 支援範圍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施行主體) ①支援事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委任하여 施行한다.

②해당 市·郡에 第11條第1項第2號의 年度別要請書와 長期計劃 建議要請書 제출 및 第12條第1項의 事業의 施行을 위해 住民代表와 關係專門家가 참여하는 地域協議會를 들 수 있다.

第14條(支援金 決定)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年度別 計劃과 基金運用計劃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事業費는 支援基金으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한다.

#### 第4章 補 則

第15條(報告 및 檢査)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基金이 支援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支援事業에 관한 事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의 改正등) ①特定多目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3 및 第42條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삭제되는 特定多目的법 第42條의3 및 第4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되는 사업은 그 사업 終了時까지 從前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了되는 多目的 댐 周邊 地域 支援 事業 財源 使用 殘額은 事業 終了後 2月 以內에 이 法 第6條의 基金으로 納入한 다.

## 5.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 목록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자원이용세 신설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댐 (      시군)	소관부서	(중앙) 내무부 (도) 세정과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도의 자원실태를 감안할 때, 충주·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자원과 풍부한 관광자원에 대한 세원화 대책이 필요</li> <li>○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용수(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      :    10m<sup>3</sup>당 1원</li> <li>- 지하수(채수된 음용수, 목욕용 온천수등) : 1m<sup>3</sup>당 10원</li> <li>- 지하자원(채광된 광물)      :    채광된 광물가액의 0.1%</li> </ul> </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수자원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li> <li>○ 지역개발세를 자원이용세로 변경함과 동시에, 관광세를 포함시켜 관광자원을 세원화하는 방안 연구검토 필요</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추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3. 2    <u>관광세 신설 건의 (내무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세(목적세)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 부가하여 징수(1할)</li> </ul> </li> <li>○ '94. 9. 15    댐특위 국회의원회관 방문, 지역국회의원에게 <u>자원이용세 신설을 건의</u></li> <li>○ '94. 10. 29    <u>내무부 회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내 용&gt; 자원이용세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서, 단기간내에 조치하기는 곤란한 사항임.</li> </ul> </li> </ul> </div> <div> <input type="checkbox"/> 향 후 계 획    :    완 료         </div>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계 목	적성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상황	추진 중
민원지역	충주댐 (단양군)	소관부서 (중앙) 내무부	(도) 도로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 단성면 하방리 (충주호 상)</li> <li>○ 사업개요 : 교량 L=450M B=10.0M 소요사업비 160억원 (국비70%, 지방비30%)</li> </ul> <p><b>□ 민원 건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 3. 9 : 중앙고속도로 신단양대교 건설시 병행가설 건의</li> <li>○ 94. 8. 31 : 단성, 적성주민(2,431명) 국회 청원</li> <li>○ 94. 10 ~ 12 : 적성대교 건설 주민 궐기 대회</li> <li>○ 94 ~ 현재(수차) : 군, 주민대표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적성대교 가설건의</li> </ul> <p><b>□ 추진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1 : 도로공사 예산에 설계 용역비 5억원 확보</li> <li>○ 96. 8. 26 : 군도 노선인정 공고</li> <li>○ 96. 12. 27 : 한국도로공사와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협약 체결(단양군↔도공)</li> <li>※ 협약내용 : 기본설계 1억5천만원, 연결도로개량 3억5천만원</li> <li>○ 97. 4 : 적성대교 기본설계 및 연결도로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li> <li>※ 용역기간 '97. 5 ~ '97. 9</li> </ul> <p><b>□ 향후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도로 개량사업 시행 : '97. 10 ~ '98. 6</li> <li>○ 교량가설공사 : 기본설계완료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추진</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옥순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상황	추진 중
민원지역	충주댐 (단양군)	소관부서	(중앙) 내무부 (도) 도로과	

## □ 현 황

- 위 치 :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 수산면 괴목리 (충주호 상)
- 사 업 량 : 교 량 L = 450M B = 10.0M
- 사 업 비 : 19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공사기간 : '96. 12 ~ '99. 12 ( 3년 )
- 시 행 청 : 제천시청

## □ 민원 건의 내용

- 조기완공으로 오지지역 교통편의 숙원사업 해결요구
-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요구
- ※ 사업비 190억원 : '97까지 예산확보 69억원 미확보 121억원

## □ 추진 상황

- '94. 6. 30 옥순대교가설 건의문 채택(의회 → 도 → 내무부)
- '94. 12. 24 '95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양여금지원) 지구로 확정(내무부)
- '96. 7. 24 용역설계 완료
- '96. 12. 26 공사계약 (도급회사 : 한화건설, 명성기업, 고려개발)
- '96. 12. 30 공사착공 (현공정 12%)

## □ 향후 계획

-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 ※ 지방양여금의 편중지원 불가로 계획공기('99.12월)내 공사마무리 지남
- 중앙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계 목	댐건설로 인한 이설도로 포장사업비 국고지원	추진상황	추진 중
민원지역	충주댐, 대청댐	소관부서	(중앙) 내무부 (도) 도로과

## □ 현 황

- 군 도 : 노선수 13 개소, 연장 195.8 KM, (포장 56.1 KM, 미포장 139.7 KM)
- 농어촌도로 : 노선수 12 개소, 연장 31.6 KM, (포장 14.1 KM, 미포장 17.5 KM)

## □ 민원 건의 내용

- 문제점 및 민원사항 : 이설도로 조기확.포장으로 주민불편 해소 요구
- 건의 사항 : 지방비(군비)확보 지남, 양어금지원 확대 요망

## □ 추진 상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전 체		기 투 자		'97 계 획		향 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227.4	123860	70.2	29,312	8.1	4,565	149.1	89,983
군 도	195.8	110950	56.1	23,651	7.6	4,165	132.1	83,134
농어촌도로	31.6	12,910	14.1	5,661	0.5	400	17.0	6,849

## □ 향 후 계획

-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

□ 추진상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개소	전		기		'97		향		
			물	사	물	사	물	사	물	사	
			량	업비	량	업비	량	업비	량	업비	
합	합계	25	227.4	123860	70.2	29,312	8.1	4,565	149.1	89,983	
	군도	13	195.8	110950	56.1	23,651	7.6	4,165	132.1	83,134	
	농도	12	31.6	12,910	14.1	5,661	0.5	400	17.0	6,849	
충 주 담	합계	합계	12	141.1	81,385	52.7	21,501	6.5	3,665	81.9	56,219
		군도	9	137.2	80,050	51.5	21,351	6.5	3,665	79.2	55,034
		농도	3	3.9	1,335	1.2	150	-	-	2.7	1,185
	충주	합계	5	77.4	41,974	26.5	11,925	2.0	1,104	48.9	28,945
		군도	4	75.1	40,989	26.5	11,925	2.0	1,104	46.6	27,960
		농도	1	2.3	985	-	-	-	-	2.3	985
	계천	합계	2	48.5	30,800	16.8	8,626	4.0	2,120	27.7	20,054
		군도	2	48.5	30,800	16.8	8,626	4.0	2,120	27.7	20,054
		농도	-	-	-	-	-	-	-	-	-
단양	합계	5	15.2	8,611	9.4	950	0.5	441	5.3	7,220	
	군도	3	13.6	8,261	8.2	800	0.5	441	4.9	7,020	
	농도	2	1.6	350	1.2	150	-	-	0.4	200	
대 청 담	합계	합계	13	86.3	42,475	17.5	7,811	1.6	900	67.2	33,764
		군도	4	58.6	30,900	4.6	2,300	1.1	500	52.9	28,100
		농도	9	27.7	11,575	12.9	5,511	0.5	400	14.3	5,664
	청원	합계	3	13.5	6,699	7.2	3,780	-	-	6.3	2,919
		군도	-	-	-	-	-	-	-	-	-
		농도	3	13.5	6,699	7.2	3,780	-	-	6.3	2,919
	보은	합계	2	5.4	3,740	1.4	140	-	-	4.0	3,600
		군도	1	4.0	3,600	-	-	-	-	4.0	3,600
		농도	1	1.4	140	1.4	140	-	-	-	-
옥천	합계	8	67.4	32,036	8.9	3,891	1.64	900	56.86	27,245	
	군도	3	54.6	27,300	4.6	2,300	1.10	500	48.90	24,500	
	농도	5	12.8	4,736	4.3	1,591	0.54	400	7.96	2,745	

※ 농도 = 농어촌도로

제 목	충주호 국민관광지 개발대책		추진상황
민원지역	충주, 제천	소관부서	문화관광국 관광과

□ 현 황

- 사업지구(10개지구) : 충주(칠금, 서운, 문화, 종민)  
제천(교리, 계산, 물태, 탄지, 능강)  
단양(도담)

○ 규 모 : 3,364천 m<sup>2</sup> (1,018천평)

○ 사업기간 : '89 - 2001년

□ 민원.건의내용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계획대상지구중 여건이 좋은(물태, 탄지등) 지구를 1급수 수질개선 전이라도 환경영향을 최소한 저감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요망

□ 추진상황

- '93. 7. 24 : 충주호권 관광개발 협조요청(교통부 → 건설부)
- '93. 8. 19 : 충주호권 관광개발 요청사항회신(교통부 → 건설부)
- '94. 1까지 I 급수 목표달성 어려움, 신규 오염원 입지불가
- 현재 충주호가 1급수로 수질개선이 안되었으므로 당초계획 추진불가

※ 년도별 충주호 수질

년도별	'91	'92	'93	'94	'95	'96
BOD (ppm)	1.2	1.4	1.2	1.7	1.8	1.7

- I 등급1이하, II등급3이하, III등급6이하, IV등급8이하

□ 향후계획

- 사업추진지구(칠금, 교리, 도담, 능강) : 민자사업추진 행정지도 강화
- 개발사업부진지구(물태, 탄지, 계산) : 소규모로 개발계획 재조정
- 관광지개발절차 미이행지구(서운, 종민, 문화) :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서 제외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대청광역상수도 취수탑 상류지역 이전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대청댐(2시군)	소관부서	(중앙)건설교통부 (도)수질관리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청원군 문의면 상장리)이 본댐에서 5km나 안으로 들어간 만곡부에 위치하는등 지형적인 여건과</li> <li>○ 주변의 오염원등으로 부영양화 현상 및 이취미 발생</li> </ul> <p><b>□ 민원·건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가을에 심한 부영양화 현상과 이취미 발생</li> <li>○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가중</li> <li>○ 지역현안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li> <li>○ 취수탑 위치 변경</li> </ul> <p><b>□ 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5.16 :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이전 건의(건교부)</li> <li>○ '94. 5.25 :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이전 건의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 기본설계과정서 검토</li> </ul> </li> <li>○ '94.12.29 :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 위치선정을 위한 수질검사</li> <li>○ '95. 1. 9 :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 이전 건의(건교부)</li> <li>○ '95. 2. 3 :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 기본계획(안) 협의</li> <li>○ '95. 2. 8 : 대청댐 광역상수도 취수탑이전 타당성 현지 점검</li> <li>○ '95.10.28 :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수탑 위치 변경 : 현위치 → 역조정지내</li> </ul> </li> <li>○ '96. 5. :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사업 실시설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수탑 위치 확정 : 현위치 → 역조정지내</li> </ul> </li> <li>○ '96.10.16 :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사업 사업착공 공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수탑을 현위치에서 본댐 하류 2.9km 지점의 역조정지내로 변경</li> </ul> </li> </ul> <p><b>□ 향후계획</b></p>			

# 댐관련 민원 · 건의 추진상황

제 목	충주광역상수도 사업비 국고지원	추진상황	완료
민원지역	충주댐(5시군)	소관부서	(중앙)건설교통부 (도)수질관리과

## □ 현 황

- 충주광역상수도
  - 기 간 : '94~'98년(충주,진천,괴산,음성,증평 및 경기도 이천,안성)
  - 사업비 : 1,290억원(취수장 및 송수관로등 890억, 정수장 400억)
- '93이후 신규건설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지방비 분담
  - 지방비(토특회계 용자)
- 정수장 건설사업비 400억원 수수량 비율에 의거 분담

## □ 민원 · 건의내용

- 기 시행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은 전액 국고부담 설치 완료
-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른 자체사업비 확보도 지난한 실정이므로
- 정수장건설비 분담제 철회
- 상수도 사업을 지방양여금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 요청

## □ 추진상황

- '93. 3.30 : 지자체 분담제 폐지 건의(경제기획원,건설부,내무부)
- '93. 6. 3 :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내무부)
- '93. 6.19 : 충주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 제출  
(도의회 ⇒ 민자당,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 '93. 9.15 : 지방비 분담관련 관계관회의(내무부)
- '93.10. 6 :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방안에 대한 관계관회의(건설부)
- '93.11. 1 :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지방비 부담 지시(내무부⇒각 시·도)
- '93.12.27 : 수도법 개정
  - 수도법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
  -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 향후계획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계 목	옥천 종합관광휴양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대 청 댐 (옥천군)	소관부서 (중앙) 건설교통부 (도) 지역개발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옥천군 군북면 중약리 산 1-1번지 일원</li> <li>○ 면 적 : 289,200㎡</li> <li>○ 용도지역변경(안) : 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li> </ul> <p><b>□ 사업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93 ~ '96</li> <li>○ 사 업 비 : 19,530백만원</li> <li>○ 시 행 자 : 계광건설(주) 옥 동진</li> <li>○ 주요시설 : 위락·유희시설, 운동시설, 숙박·편익시설 등</li> </ul> <p><b>□ 민원·건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 종합관광지 개발예정 지역은 교통부의 전국 5대 관광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충북 남부지역의 균형개발과 청주권, 대전권의 국민 여가생활 공간으로 기여토록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요망</li> </ul> <p><b>□ 추진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5. 24 : 중앙부처 협의결과 당시 환경처 및 금강환경관리청 불협의</li> <li>※ 불협의사유 : 사업지역이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권역으로서 대청호 수질보전과 특별대책지역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음</li> <li>○ '94. 9. 22 : 관계부처 불협의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불가 통보</li> </ul>			

## 댐 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혜자 부담조치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충주댐(공통)	소관부서	(중앙) 환경부, 건교부 (도) 환경관리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 유역 환경기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장 : 3 개소(충주, 제천, 단양)</li> <li>- 분뇨처리장 : 6 개소(충주2, 제천, 괴산, 음성, 단양)</li> </ul> </li> <li>○ 연간운영비 : 5,351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는 92년부터 충북, 충남, 대전 3개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 매년 운영비 분담</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 부담이 과중 하므로 수혜자 부담 조치 요망</li> </ul>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댐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수혜자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나</li> <li>○ 충주댐은 광역상수원도 아니고, 특별대책지역도 아니며, 댐 관련법에도 수혜자 부담 근거규정이 없어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 불가 입장임</li> </ul> <p><input type="checkbox"/> 추 진 상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 협조요청 (서울, 인천시, 경기도) : 1 회</li> <li>○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건의 7 회 (수혜자가 부담하는 법적근거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 4 회</li> <li>-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 지방제도발전위원회에 : 3 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 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의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추진</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댐지역내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비 국고지원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대청댐(옥천)	소관부서	(중앙) 환경부	(도) 환경지도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치 :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li> <li>○사업기간 : '95. 4 ~ '97. 5</li> <li>○사 업 비 : 6,613 백만원</li> <li>○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면적 : 49,670 m<sup>2</sup></li> <li>- 소각시설 : 8 톤/일</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중 2,338 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5. 9 사업비 국고지원 요청 ( 2,338 백만원)</li> <li>○ '95 사업비중 일부 국도비 지원 (2,50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 1,500 백만원</li> <li>- 도비 : 1,000 백만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p>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개발제한 규제완화	추진상황	완료
민원지역	대청댐(2시군)	소관부서	(중앙) 환경부 (도) 수질관리과

##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 충북권(청원, 보은) 101.291km<sup>2</sup>
- 행위제한
  - 허가사항 :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신·증·개축, 죽목의 재배 및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등 형질변경
  - 금지사항 : 가축 방사행위, 행락, 야영·야외 취사행위, 어패류 포획 및 양식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 민원·건의내용

-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화 요망

## 추진상황

- '94. 9.24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규제사항 일부 완화
  -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부주택으로 거주하여온자의 주택 신·증축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 117m<sup>2</sup>까지 가능하였으나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를 포함하여 지목에 불구하고 132m<sup>2</sup>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제도화
  - 버섯재배사 1가구당 200m<sup>2</sup>이하에서 300m<sup>2</sup>이하로, 퇴비사 1가구당 100m<sup>2</sup>이하에서 200m<sup>2</sup>이하로 확대하고 과수원 등의 관리용 건축물, 유리온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시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목에 불구하고 200m<sup>2</sup>이하의 주택의 신·증축 및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토록 제도화

## 향후계획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만료후 대책	추진상황	종 결
민원지역	대청호	소관부서 (중앙) 해양수산부 (도) 축산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두리양식장 면허처분 : 24 개소(보은군 14, 옥천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기간 만료 : 21 개소(보은군 11, 옥천군 10)</li> <li>- 면허기간 존치 : 3 개소(보은군) - '97.5.31. 2건, '97.9.24. 1건 기간만료</li> </ul> </li> <li>○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대청호내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허가가 금지됨. &lt;환경부 고시 90 - 15. 16('90.7.19)호&gt;</li> <li>○ 수산업법 보상규정에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시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공익상 범위에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은 미 포함 되어있음.</li> </ul> <p><b>□ 민원.건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객관성있는 수질오염도를 규명하여 수질오염도가 높지 않을시는 가두리양식장을 축소하여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환경부고시 완화</li> <li>○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법적보상규정 제정협의 요망</li> </ul> <p><b>□ 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대책방안을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건의('93.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수질오염도 조사 및 환경부 고시완화</li> </ul> </li> <li>○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93.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안)에 법적보상 규정을 미련 하였으나 관계부처간의 협의시 환경부의 반대로 개정이 되지 않았음.</li> </ul> </li> </ul>			

-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석하에 청와대에서 가두리양식장 대책회의 개최('96.1.30)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실무자 회의 개최('96.12.5)
- 가두리양식장 대책방향 결정 시달('97.3.7)
  -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현재와 같이 연장허가 금지
- 기간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 소송 : 3 건(피고 : 대한민국)
  - 대법원 1건, 서울지방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 가두리양식장육상양식전환사업 추진(개소당 사업비 500 백만원)
  - '95 : 4건, '97 : 1건 육상양어장으로 이전

## □ 향후계획

-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결정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댐주변 쓰레기 수자원공사 수거처리 일원화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충주, 대청댐	소관부서 (중앙) 환경부	(도) 환경지도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댐내 부유물을 수거하여 육상으로 이송하면</li> <li>○ 해당 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매립장에 무상 반입처리</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내용(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내 부유물 수거처리를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주기를 요망하나</li> <li>○ 수자원공사의 자체 처리시설이 없고 인력,장비도 부족하여 신속한 수거가 곤란</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도 이후부터는 수자원공사의 자체처리시설 확보시까지 인근 자치단체에서 매립장등 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되 위탁처리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부담토록 조치</li> <li>○ 충주댐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소각로 1 기를 설치 자체 처리중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처리)</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p>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댐내 선착장시설 건설비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대청댐(옥천군)	소관부서	(중앙)수자원공사(도)대청댐관리사무소

**현 황**

- 기존 선착장 : 5개소
  - 안남면 연주리, 안내면 인포리, 군북면 소정리,  
군북면 도호리, 군북면 석호리 각 1개소

**민원·건의사항**

- 기존 선착장은 댐 수위가 70M 이상이 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 설치되어 갈수기에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옥천읍 오대리 및 군북면 막지리 지역에 신규 선착장 설치 건의

**추진상황**

-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본사(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

**향후계획**

-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는 '97년도에 특별지원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신규선착장 2개소(오대·막지)설치하고, 기존시설 5개소에 대하여는 개·보수 계획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댐내 마을 노후 자가도선 교체비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대청댐(옥천군)	소관부서	(중앙)수자원공사(도)대청댐관리사무소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막지리, 도호리, 용호리 4개지역 : 4척 - 농사 및 기타 필요시 사용</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척중 이용주민이 많은 2개지역(오대리,막지리)의 선박에 대하여 대체 선박 건조 요구</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97년도 예산에 노후선박 2척 건조비 70,400천원 기 확보</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9. 30일 전까지 선박 2척을 건조하여 지원할 계획임</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승조회(운천호)운영비 전액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충주댐(충주시)	소관부서	(중앙)수자원공사 (도)치수과	
<p><input type="checkbox"/> <b>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1척 : 운천호 ( 12톤, 18인승 )</li> <li>○ 운 영 자 : (사)충주호승조회(충주시목벌동64-2 회장:박태식)</li> <li>○ 운항구역 : 충주호 전수역</li> <li>※ 진수일 : '94. 4. 1</li> </ul> <p><input type="checkbox"/> <b>민원·건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천호 운영비 전액지원 요망</li> </ul>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다목적댐시행령개정시 우리도에서 치수 58701-110 ('94.2.28)호로 건의 및 건설교통부 방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비로 도선및선착장 시설의 유지·보수·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건의)</li> <li>○ 동법시행령제37조(지원사업의 내용)에 건의내용 신설 시행 ('9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 및 지역위원들의 반발로 운천호 운영비의 전액을 댐지원사업비로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되어 부족분은 도비로 지원</li> </ul> </li> <li>○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특정다목적댐법을 포괄하여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안)” 검토중(운천호 운영비를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97정기국회에 상정 계획</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유료낙시터, 가두리양식장 근본대책 수립	추진상황	종 결
민원지역	충주댐	소관부서	(중앙) 해양수산부 (도) 축산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만료된 유료 낙시터 : 12 개소(충주시 8, 제천시 4)</li> <li>○ 가두리양식장 면허처분 : 34 개소(충주시 18, 제천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기간 만료 : 9 개소(충주시 2, 제천시 7)</li> <li>- 면허기간 존치 : 25 개소(충주시 16, 제천시 9)</li> </ul> </li> <li>○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불가로 기간연장 불허</li> </ul> <p><b>□ 민원.건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설물을 축소, 주변 환경정화 철거등의 조건등을 부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 될수있는 범위내에서 항구적으로 존치되도록 허가 요망</li> <li>○ 또는, 충분한 보상으로 관련 종사자 생계대책 수립</li> </ul> <p><b>□ 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석하에 청와대에서 가두리양식장 대책회의 ('96.1.30)</li> <li>○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실무자 회의('96.12.5)</li> <li>○ 가두리양식장 대책방향 결정 시달('9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가두리양식장 : 1회에 한해 기간연장허가 하되 7년으로 한정</li> <li style="padding-left: 40px;">유료낙시터 : 6년간 허가</li> </ul> </li> <li>○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료낙시터 수면사용동의 방침 결정 통보('97.3.5)</li> </ul> <p><b>□ 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기간이 남아있는 가두리양식장은 기간연장 허가</li> <li>○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간의 재협의</li> <li>○ 유료낙시터는 재허가</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재 목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댐 (      시군)	소관부서	(중앙) 내무부 (도) 세정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 지역개발세 개요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92. 1 신설된 도세(목적세)</p> <p>○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용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li> <li>- 지하수 (채수된 음용수, 목욕용 온천수등)</li> <li>-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내용</p> <p>○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이 낮으므로 이의 현실화를 요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용수(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 : 10m<sup>2</sup>당 1원</li> <li>- 지하수(채수된 음용수, 목욕용 온천수등) : 1m<sup>2</sup>당 10원</li> <li>- 지하자원(채광된 광물) : 채광된 광물가액의 0.1%</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 상황</p> <p>○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인상을 중앙에 건의 : 4회 (내무부 3, 대통령비서실 1)</p> <p>○ '94. 7. 1 지역개발세 세율 <u>50%인상 조정 (도조례 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용수 : 10m<sup>2</sup>당 1원 ⇒ 1.5원</li> <li>- 지하수 : 1m<sup>2</sup>당 10원 ⇒ 15원</li> <li>- 지하자원 : 세율 0.1% ⇒ 0.15%</li> </ul> <p>○ '95. 1. 1 지역개발세중 <u>지하수에 대한 용도별 구분 현실화(지방세법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중 음용수 100원, 목욕용 온천수 50원, 기타 10원</li> </ul> <p><input type="checkbox"/> 향 후 계 획 : 완 료</p>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댐주변지역지원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충주댐(충주시)	소관부서	(중앙)건설교통부 (도)치수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다목적댐법 개정('93. 12. 10, 법률제4601호)으로 지원 기금 및 지원금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전 : 발전판매 수입금의 5/1,000이내</li> <li>· 변경후 : 발전판매 수입금의 10/1,000이내 수도·공업용수판매수입금의 50/1,000이내</li> </ul> </li> <li>-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변경전보다 약 2.5배 이상 상향지원</li> </ul> </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주변지역지원금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판매 수입금의 5/1,000 ⇒ 50/1,000</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93. 12. 10, 법률제4601호)</li> </ul>			

## 댐관련 민원. 건의 추진상황

제 목	충주조정지댐 하류지역 수해 상습 농경지 항구대책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충주댐 (충주시) 소관부서	(중앙)한국수자원공사 (도) 농지개발과	
<p><input type="checkbox"/> <b>현 황 (민원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97번지</li> <li>○ 지 적 : 1,475㎡ (전)</li> <li>○ 소유자 : 충주시 교현동 228-6번지 양 성 현            ※ 세국토지: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97-1 (파랑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고려 여유로 보상한 토지임)</li> </ul> <p><input type="checkbox"/> <b>민원. 건의내용</b></p> <p>조정지댐 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금면 지역 일부 농경지는 잘떨어지는 흙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농경지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요망</p> <p><input type="checkbox"/> <b>추진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4.27 : 도에서 댐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처리토록 통보</li> <li>○ '94. 5.21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결과 회신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 유실 부분은 파랑 등을 고려하여 여유로 보상한 구역임</li> <li>- 금년 홍수기후 조정지댐 연안을 면밀히 조사후 필요시 대책 검토 예정</li> </ul> </li> <li>○ '97. 5. 2 : 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1차회신에대한 조치결과조회</li> <li>○ '97. 5. 3 :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지댐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사면이 유실되고 있으나 그곳은 파랑 등을 고려하여 여유 보상한 구역으로 긴급한 보강 조치를 요하지 않음</li> <li>- 앞으로 강우 및 기상상황 악화로 인한 세굴현상이 확대될 때에는 사면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li> </ul> </li> <li>○ '97. 5. 7 : 사면보호 필요시 조치토록 충주시에 통보</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 후 계 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세굴현상 확대등으로 사면보호가 필요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 호안설치 요구</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하점단 재해 위험지구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충주댐 (충주시군)	소관부서 (중앙)	(도) 치수과
<div style="margin-bottom: 15px;"> <input type="checkbox"/> <b>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하점단 부락</li> <li>○ 가옥 및 농경지 : 26동 1.8ha</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5px;"> <input type="checkbox"/> <b>민원·건의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점단 부락 이주대책(택지 조성)요구</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5px;"> <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 11. 7 이한옥외 20명으로부터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요구 - 이류면장 경유</li> <li>○ 92. 1. 11 취락구조 개선지구 확정 - 도</li> <li>○ 92. 1. 28 취락구조 개선사업 포기 - 이류면장</li> <li>○ 92년도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li> <li>○ 92. 4 ~ 93. 5 부락앞 제방겸 도로공사 추진 L=980M</li> <li>○ 95년도 이류면 농어촌 개발기본 계획에 정주권(문화마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반영</li> <li>○ 현재 주민 동의안 징구중</li> </ul> </div> <div> <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동의안 확정 정주권 개발(문화마을)사업으로 추진</li> </ul> </div>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수위조정지댐 (수중보) 건의	추진상황	추진중
민원지역	충주댐(단양군)    소관부서	(중앙)수자원공사 (도)치수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의 계속적인 수위저하로 유람선이 신단양까지 운항하지 않아 단양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li> </ul> <p><b>□ 민원·건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양군 지역에 항시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수중보 건설</li> </ul> <p><b>□ 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 8 ~ '93. 10 : 충주댐 수위유지를 위한 청원건의 5회</li> <li>○ '94. 8 ~ '94. 12 : 수중보 타당성 용역(신단양지역개발회)</li> <li>○ '95. 3                 : 제14대 국회 및 중앙정부 청원</li> <li>○ '96. 7                 : 제15대 국회 청원서 제출 (소계의원:김영준의원)</li> <li>○ '96. 10. 16         : 영월댐 건설에 따른 지역영향 및 수중보 타당성 용역(단양군) (용역기간: '96.10~'97.5 충북대 수자원 연구센터)</li> <li>○ '97. 4. 28           : 수중보 설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li> </ul> <p><b>□ 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수중보 타당성 용역” 을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5월중 추진</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계 목	산업기능 보강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추진상황	추진 중
민원지역	충주댐 (단양군)	소관부서	(중앙)건설교통부 (도)지역개발과

## □ 현황

- 노선명 : 대로 3-1호선과 군도 4호선 중용도로
- 구간 : 신단양 성신APT~도담삼봉 경유~국도5호선(매포읍 하괴리)
- 사업량 : L = 4.4km, A = 108천㎡ (4차선 확포장)  
 ※ 삼봉유원지~국도5호선 구간 L=1,558m 하천점용 협의중 (단양군↔수자원공사)
- 사업비 : 200억원 정도

## □ 민원·건의 내용

- 성신양회 공장증설 및 도담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후 4차선으로 확포장

## □ 추진 상황

- '96. 4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성신양회) 결정시 소로 1-2호선을  
 중로 1-2호로 변경하여 여천리 구역계까지 연장하고 제천~대강간  
 국도에서 중로 1-3호선 시점까지 확포장을 금회사업시 실시할 것을  
 조건부 결정 (충청북도)
- '96. 7 : 도시계획결정시 조건부 승인된 구간에 대하여 협의(단양군↔수자원공사)  
 ※ 단양군에서 3차에 걸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저수구역 감소를 이유로 부동의

## □ 향후 계획

- 본 사업은 충주댐 저수구역을 이용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 수자원공사 충주댐사무소와 편입토지 협의완료후 사업 추진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개발가능한제내지를지방자치단체에 환원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충주댐(단양군)	소관부서	(중앙)수자원공사 (도)치수과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양군 매포읍 하피리 도담삼봉 주변 고수부지를 군에서 개발하여 유원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고수부지가 수자원공사 소유로 개발지연등 어려움이 많았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민원·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내 고수부지를 시·군 재산으로 환원</li> </ul>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3. 25 : 수자원공사에 협의</li> <li>○ '94. 4. 14 : 수자원공사 불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관리 및 배수위 영향등으로 댐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불가</li> </ul> </li> </ul>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제 목	유휴지 관리 위탁협약의 개선	추진상황	완 료
민원지역	충주댐(단양군)	소관부서 (중앙)건설교통부 (도)치수과	
<p><b>□ 현 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 11 단양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체결된 댐 저수구역내 유휴지관리위탁협약에 의해 농경지 점용의 허가만이 단양군에 위탁되어 있는 실정임</li> </ul> <p><b>□ 민원·건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생활 민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골재채취허가도 유휴지 관리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p><b>□ 추진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8. 8 : 유휴지관리위탁협약의 타당성 결여 개선 건의 (단양군)</li> <li>○ '96. 9. 24 : 댐저수구역 유휴지에 대한 년차적 직접관리 회신 (한국수자원공사)</li> <li>- '96년 충주시, '97년 단양군, '98년 제천시</li> </ul> <p>※댐구역내 골재채취 허가는 특정다목적댐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장이 허가권자로 댐의 담수능력 제고 및 보호구역 관리와 댐운영관리 측면에서 골재허가권 이관이 어려워 건의 추진 지난</p>			

# 댐관련 민원·건의 추진상황

체 목	상진 ~ 고수간 비상우회도로 건설	추진상황	추진 중
민원지역	충주댐 (단양군)      소관부서	(중앙) 건설교통부	(도) 도로과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재가 급커브로 적설시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 등 위험상존</li> <li>○ 구인사 고수동굴등 신단양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회도로개설 필요</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진 ~ 고수간 비상우회도로건설</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추진상황</p> <p>&lt; 사업개요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선 명 : 국가지원지방도 33호 고성 ~ 평창 선</li> <li>○ 사 업 량 : 단양 ~ 가곡간 우회도로 L = 9.3 km</li> <li>○ 사 업 비 : 390 억</li> </ul> <p>&lt; 추진상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국비지원 (70%) 이 필요한사업임</li> <li>○ '96년전국의 국가지원지방도에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사용역실시</li> <li>○ 용역조사결과 단기사업 계획지구로 2001까지 사업착수계획</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추진계획</li> <li>○ 사업착수년도 미정</li> </ul> </div>			